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06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임오경·장종태·문금주

한정애・조 국・박지원

이성윤 · 한병도 · 김병주

임광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 동안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2018년 2,400 여 건에서 2022년 4,300여 건으로 80%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그 중 택 시를 활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24년 5월에 발생한 술에 취한 50대 승객이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여 코뼈가 부러진 사건, 2024년 6월에 일어난 남성 승객이 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추행한 사건의 경우, 택시 차량 내 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음.

시내버스 등에 한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칸막이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택시는 버스보다 공간이 협소하여 각종 범죄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감염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운전자와 승객 사이에 보호벽 시설이 더 크게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다만, 현재 지자체들이 택시 보호격벽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현재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원 대수가 한 정적인 상태임.

이에 국가가 모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보호벽 등과 같은 안전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9호 및 제4항제3호, 제5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제52조2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 3. 제50조제2항제9호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제5장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안전시설의 설치) 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와 여객을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벽시 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재정 지원) ① (생 략)	제50조(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		
	<u></u> 이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	②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			
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	,		
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제52조2에 따른 안전시설을		
	<u>설치·개선하는 경우</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4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제50조제2항제9호에 따른 안		

⑤ ~ ⑨ (생 략) <u><신 설></u> 전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 <u>우</u>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안전시설의 설치 권장)

국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
수종사자와 여객을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벽시설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
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